

가



승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안내



안





가업상속공제 제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18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액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액 한도 상이

10년 이상
200 억원

20년 이상
300 억원

30년 이상
500 억원

가업상속재산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가업상속공제 제도]

▶ 사례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600억원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구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상속 재산가액	600억원	600억원
가업상속공제액	없음	(500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595억원	95억원
세율	50%(누진공제 4.6억)	50%(누진공제 4.6억)
산출세액	292.9억원	42.9억원
신고세액 공제	(8.787억원)	(1.287억원)
자진납부 세액	284.113억원	41.613억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42억 5,000만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참고 일반 상속세·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③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 1호/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요건	기준	상세내역
피상속인	주식 보유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 후 7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 요건 위배한 경우는 위 산식에서 ‘자산처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재계산 ('19.1.1.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 ⑤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의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 적용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사례 일반적 증여와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乙)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 70억원을 증여
-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임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분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0.5억원)	증여공제	(5억원)
6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5억원
50%(누진공제 4.6억)	세율	10%(30억원 초과분은 20%)
30.15억원	산출세액	10억원
(0.9045억원)	신고세액 공제	-
29.2455억원	자진납부 세액	10억원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9억 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 참고 일반 상속세·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요건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③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 1호/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수증자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③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2019. 12. 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증여자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14. 12. 31. 이전 증여분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으나 개정 법령부칙 제16조에 따라 종전 가업승계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 7년이 적용됨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해당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 제외)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③ 증여받은 수증자의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 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 지원

세목		연부연납기간(2008. 1. 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문의 및 무료 기업승계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자문 프로그램 02-2124-3145~7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상담센터-중소기업승계세무자문프로그램)

KBIZ 중소기업중앙회